

함께해요 안전보건



- 현장에선 너도 나도 모두 안전보건지킴이 -

산업안전보건본부
정책 1.2본부,
조직확대본부
조직강화본부
등10개 본부

CONTENTS

01 사업추진배경	1
02 사업방향	3
03 사업추진	4
04 기대효과	10
05 향후계획	12

사업추진배경

한국노총 회원조합 안전보건담당자
참여형 산업안전보건교육



- 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인원 : 120명
- 교육시간 : 2박 3일
- 교육 과정 : 안전+보건+산재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료
- 안전보건홍보물 자료
- 사업장 특성별로 자료

사업추진배경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산업안전보건담당자 회의

26개 회원조합
16개 시·도 지역본부
53개 지역지부
3,800 개소 단위 노동조합



2020년 1월 1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노동조합 안전보건 자료 요청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의
월별 안전보건활동 가이드가 필요



사업 방향성

첫번째

기술적으로
비 전문가인
안전보건담당자들에게
활용도가 있게

두번째

현장점검리스트와
관계법령을 활용한
안전보건활동
연간 계획표가

세번째

안전보건관련 정보 전달
최신 동향과
예방과
보상이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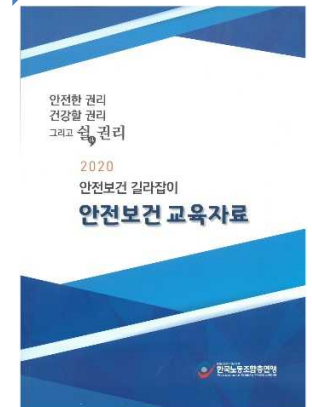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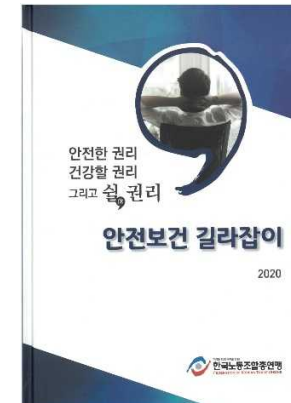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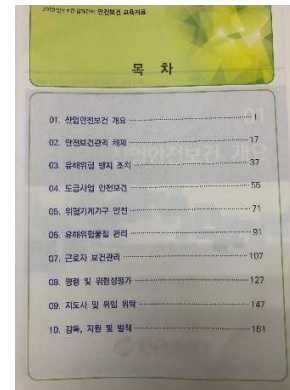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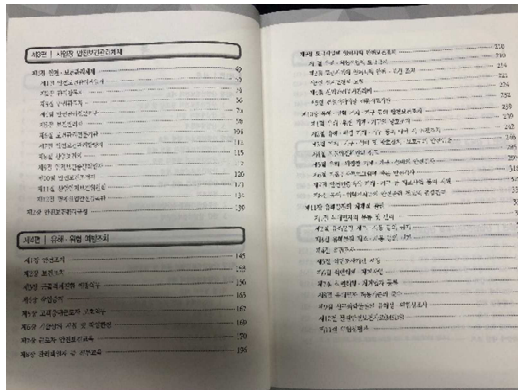
사업추진

안전보건 길라잡이& 교육자료

안전보건 길라잡이 제작 논의 및 원고 작성

안전보건 길라잡이 & 교육
교재 검토 전문가 간담회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단위
노조 배포(3,800개소 배포)



사업추진

안전보건 지킴이 다이어리



이달의 중점사항

일별, 주별 월별 안전보건 점검사항
안전보건교육 일정 수립,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확인,
근골격계유인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 재해발생확인 : 매월 초
- 현장안전점검 : 1회/2주

사업추진

안전보건 지킴이 다이어리

2021 1월 주간 계획 WEEKLY CHECK LIST

12 December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T W T F S S M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18(월)

◎ 현장 안전점검

-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현장의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체크(2p)

◎ 안전보건관련 현장익견수령

- 현장 조합원의 안전보건관련 애로사항 및 익견수령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제 채택 여부 검토

현장안전보건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범례: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구분	점검 내용	주요점검POINT	판정	문제 및 개선방안
관	안전보건	안전교육의 실시, 교육일지의 기록·보존 상태		
	보호구	작정 보호구의 지급, 착용, 보관 상태		
	정리·정돈, 청결	작업장소의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 상태		
	작업통보	작업통보 표시, 통보확인 상태		
	안전표지 안전수칙	안전표지, 안전수칙 부착 및 청결 상태		
	안전검사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검사 실시 상태		
기	작업복장	지정된 복장의 올바른 착용 상태		
	위험기계·기구	위험기계·기구의 적정 방호장치 부착, 사용, 기능 상태		
	일반 기계	회전체 및 구동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안전덮개, 방호울, 방학, 난간대 등)		
실	운반 차량	담당자 지정 및 후진경 고음, 경광등 작동 상태		
	수공구, 작업용구	파손, 변형, 적합성 상태 (망치, 스패너, 시다리, 작업발판, 악어)		
전	전기개폐기 (차단기)	절연성 기구명 표시, 적합성 상태 (누전차단기, 과전류차단기 등)		
	전기기구, 전선	절연, 단락, 파단, 변형, 적합성, 전선장 (콘센트, 플러그, 스위치, 전선 등)		
	전동공구	파손, 전선단락, 절연, 보관상태 (핸드그라이너, 핸드드릴, 샌드 페이퍼)		
	고압가스	전도방지장치, 개이지 파손, 흡수 노후 (LPG, 산소, 알곤, 탄소가스, 아세틸렌)		
소	소화기, 소화전	소화전 노출, 흡수의 보라 및 관리 상태 (소화기: 충만, 충만, 보관장소, 점검 등)		
	유해·위험 물질	경고표지, MSD표지, 보관 상태		
	국소배기장치	파손, 탈락, 변형, 설치 위치, 흡입력		
기	계단, 통로	난간대, 미끄럼 방지조치 상태		
	원자재 및 제품	과적, 불균형 적재 상태		
비고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공통내용 〉

- 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②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③ 교육대상별
 - ① 작업법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② 건설 직종별 건강장애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직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법 제125~128조 및 제129~141조)

직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 유해인자별, 주기별로 실시하여 작업환경의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1. 직업환경측정

“직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호흡하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를 파악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등한 건강장에게 유해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여 작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1) 직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직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은 직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직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 ②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안전보건규칙 제806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본문에 관한 직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 ④ 그 밖에 직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 ⑤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직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수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직업의 직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직업환경측정 방법

사업주는 직업환경측정을 하는 때에는 소속사업장의 산업위생관리 선임자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직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직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 ②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사업추진

함께봐요 안전보건

- 1호 : 19년 산재통계, 떨어짐재해 예방,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
- 2호 : 이천화재참사,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업살인법
- 3호 : 직장 내 괴롭힘 시행 통계 소개, 끼임재해 예방, 자살로 인한 산재인정 사례
- 4호 : 특고유형 확대 소개, 부딪힘재해 예방, 코로나로 인한 산재신청 방법 소개
- 5호 : 근골격계 예방 스트레칭, 감전재해 예방, 근골격계질환의 업무관련성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 소개
- 6호 : 산재은폐, 2021년 시행되는 산안법 일부 조항,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에 대한 연구브리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문제점 소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HRU-SOLIDARITY

2020.05

vol. 01

월간 한국노총 501호 부록
산업안전보건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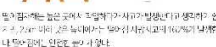
함께 봐요 안전보건



www.inochong.org

01 산업안전보건 동향	02 사람사고 현황 → 1분기 사고동향, 사망자·미수검	03 산업재해 예방 → 코로나-19와 산업안전보건법 그중 「9월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04 산재인정 사례 → 유해·위험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업병으로 인정된 1건 업무상질병
-----------------	--------------------------------------	--	---

함께봐요 안전보건



1. **바깥-지붕**

- 외벽면의 마감재, 불타는열화상 등 불이 발생하지
- 무연탄, 무연탄을 혼합하여 소각재 및 석유

2. **사다리**

- A형철 사다리의 경우 35cm 이상의 불에 견디는 사다리(불에 불 타는 경향)를 사용
- B형철 사다리의 경우 35cm 이상의 불에 견디는 사다리(불에 불 타는 경향)를 사용
- 2011년 12월 1일부터 사용 금지
- 2011년 12월 1일부터 사용 금지
- 2011년 12월 1일부터 사용 금지

소문난 남한 신사	현황	개선(2020.3.7 기준)
신남대학교 승원 호텔	· 1차에 100여명만 객실을 예약하고 있다 · 1층에는 호텔 · 2층에는 객실 100여개만 객실이 있다	· 객실을 200여개 예약한 객실을 200여개 예약하여 객실을 200여개 예약 · 객실을 200여개 예약한 객실을 200여개 예약하여 객실을 200여개 예약 · 객실을 200여개 예약한 객실을 200여개 예약하여 객실을 200여개 예약
신남대학교 호텔인 호텔	· 객실을 200여개 예약한 객실을 200여개 예약하여 객실을 200여개 예약	· 객실을 200여개 예약한 객실을 200여개 예약하여 객실을 200여개 예약

● 노동자 위생관리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린다 • 마스크를 착용한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다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엄지손가락 끝까지 깨끗하게 씻는다 • 손이 젖은 후에는 반드시 손을 마른 후 손을 씻는다
--	---

[illegible]

사업추진

카드뉴스

4회

산재예방 온라인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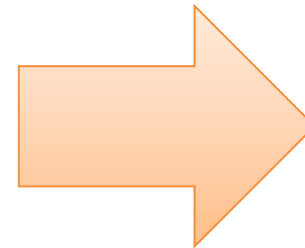
2회

안전보건 예방 동영상

5회

산업재해 예방 포스터

4회



질식재해
기업살인법
특고노동자 안전보건
감전재해
폭염 예방수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작된 결과는 한국노총 홈페이지 업로드 후
단위노조 위원장, 담당자들에게 문자 발송

기대효과

효과 1

안전보건 길라잡이· 교육자료를 통해 담당자들의
안전수준 및 지식 제고의 효과를 얻음

효과 2

안전보건 매뉴얼 수첩을 제작· 배포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가이드 역할·역량 강화

기대효과

효과 3

산재사망사고(추락, 끼임 등) 관련하여 정보전달을 통해 **경각심과 예방법**을 통한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효과 4

노동자의 전문적으로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으로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

현장에선 너도 나도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지킴이!

향후계획

플랫폼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대리운전, 음식배달 종사자-

주기적인 안전보건 자료

- 소식지, 포스터, 캠페인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길라잡이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현장개선활동사업

감사합니다